

#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최민규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562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5년 03월 31일  
발 의 자: 최민규 의원(1명)  
찬 성 자: 강석주, 고광민, 김경훈,  
김동욱, 김영철, 김원태,  
김재진, 김종길, 김지향,  
김태수, 김형재, 김혜영,  
남궁역, 남창진, 민병주,  
박 석, 박춘선, 봉양순,  
서상열, 신동원, 신복자,  
옥재은, 유만희, 유정인,  
윤기섭, 윤종복, 이봉준,  
이원형, 이희원, 정준호,  
정지웅, 허 훈, 홍국표,  
황철규 의원(34명)

## 1. 제안이유

- 현행 조례는 보도상영업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운영자증명서를 시설물 내부 및 외부의 지정된 장소에 각각 게시토록 하고 있으나, 운영자를 보도상영업시설물 이용자가 아닌 불특정 다수로부터의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내부에만 게시토록 하고 '외부게시' 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자증명서 외부게시 조항 삭제(안 제7조제2항)
- 나. 운영자 증명서의 시설물 외부게시 의무 조항 삭제에 따른 관련 별지 서식 삭제(안 별지 제7호서식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도로법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신 구조문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호제1항 전단 중 “별지 제6호 및 제7호”를 “별지 제6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내부와 외부의 지정된 장소에 각각 게시하여 누구나 이를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.”를 “내부에 게시하여야 하고, 시장이나 관리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운영자증명서와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.”로 한다.

제8조제2항제2호의 각 목 중 “바. 그 밖에 시민불편을 야기하여 이전에 필요한 시설물”을 “사. 그 밖에 시민불편을 야기하여 이전에 필요한 시설물”로 한다.

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 제7호서식을 삭제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(뒷면)

### 유 의 사 항

1. 운영할 때는 반드시 이 증명서를 게시하여야 하며, 증명서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자는 시설물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.
2. 도로점용 허가 및 시설물의 사용 권리·의무를 다른 사람에게 전매·전대·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임의로 장소를 이전해서도 아니 됩니다.
3. 운영자는 도로점용허가 및 시설물 대부계약의 내용 및 조건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됩니다.





#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

##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

### 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7호제1항 전단 중 “별지 제6호 및 제7호”를 “별지 제6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내부와 외부의 지정된 장소에 각각 게시하여 누구나 이를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.”를 “내부에 게시하여야 하고, 시장이나 관리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운영자증명서와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.”로 변경하고, 제8조제2항제2호의 각 목 중 “바. 그 밖에 시민불편을 야기하여 이전이 필요한 시설물”을 “사. 그 밖에 시민불편을 야기하여 이전이 필요한 시설물”로 변경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서울시의 재정 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

### 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	재정분석담당관
담 당 관	주병준
추계세제팀장	김중헌
추 계 분 석 관	김지혜

☎ 02-2180-7952  
e-mail : kjh0123@seoul.go.kr

**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**